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881 |
|----------|-----|

2012년 6월 26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2년 6월 26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임 옥 기)

가. 제안이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축물 에너지 시책 수립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정보 체계를 활용토록 함(안 제2조제2항)
-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안 제12조)
-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제3항)
-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기준, 대상 및 점검방법, 에너지 사용량 표시 규정을 추가 함(안 제18조~제22조)
-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재산 사용 및 대부 효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하고, 재정을 지원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4항~제7항)

다. 세부내용

- 건축물 에너지 시책 수립시 정보 활용(안 제2조제2항)
 - 시장이 건축물 관련 에너지 시책을 수립할 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안 제12조)

-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녹색 성장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계획에 대한 자문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8조제3항을 삭제함.

○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안 제18조~제22조)

- 시장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를 일정한 기준이내(냉방온도: 26℃ 이상, 난방온도: 20℃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안 제25조)

-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나 대부료 경감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함.

○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체나 재단 지원

(안 제26조 제2항)

-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나 재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영 배)

- 본 조례개정안은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 냉난방 온도관리 등을 추진하고,
- 에너지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지원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시 참고사항(안 제2조2항)

- 시장이 건축물 관련 에너지 시책을 수립할 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금년 2월23일 공포되었으나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으로 본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에 단서를 두어 시행일을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나. 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안 제8조제3항 삭제, 안 제12조)

-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에너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는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의 통·폐합 정비라고 하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방침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 할 수 있음
- 만약, 별도의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하면 위원의 위촉방법, 자격요건,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 2인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안 제18조~제22조)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소유주로 하여금 냉난방 온도를 일정한 기준이내(냉방온도: 26℃ 이상, 난방온도: 2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통일을 포함한 조문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함.
- 또한, 냉난방 온도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내공기 온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안 제20조 제2항)

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안 제20조 제4항~제7항)

-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나 대부료 경감사항은‘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조례에서도 정한 사례¹⁾가 있어 문제는 없으나,
- 사용료나 대부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마.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체나 재단에 대한 지원

(안 제26조 제2항)

-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나 재단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안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문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p.62~63, 법제처, 「홍성군 생협·가열협 생산 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유권해석

바. 종합의견

- 본 조례개정안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이나 냉난방 온도제한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 및 대부요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 계획과 그 이행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통폐합 정비라고 하는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 업무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는 상위법령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과의 통일성을 위해 입법 기술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2000toe 이상**)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8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3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

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1. 냉방: 26℃ 이상
2. 난방: 20℃ 이하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TOE)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에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별표 5] <신설 2009.7.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 |
|---|--------------|--------|-------|-------|----------|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1호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3.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4. 법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천만원 |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공공사업주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4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사업주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5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7.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또는 실태 파악을 사업주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6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8.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 | 법 제78조제3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을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경우 | 항제1호 | | | | |
| 9.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3항제2호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10.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7호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1.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8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9호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3.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 14. 법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2항제2호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천만원 |
| 15.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9호의2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1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9호의3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17.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8.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 | 30만원 | 7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19.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법 제78조제4항제10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 20.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11호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2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8조제2항제3호 | 3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천만원 |
| 2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4항제12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비 고 | | | | | |
| 1. 제13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1년 단위로 그 위반행위에 해당할 때마다 1회 위반을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 | | | |
| 2.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톤오이 미만인 사업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1.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2. “냉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 전기 냉난방기 및 출입구에 설치하는 공기차단장치(에어커튼)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개문(開門) 냉방 영업”이라 함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개문(開門) 냉방 영업 금지

제4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5조(제한행위) 제4조에 따른 사업장은 냉방기 가동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문 냉방 영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점검방법) ①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5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5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제7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로 [별표1]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실내평균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점검방법) ①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2]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냉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냉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9조(적용예외) 냉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5장 보 칙

제10조(사용제한 협의) 제5조 내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공고는 2012년6월11일부터 2012년9월21일까지 시행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 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2.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의 대부는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⑥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⑧ (생략)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전문개정 2009.4.2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효율)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13. (생략)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④ (생략)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⑦ (생략)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시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5. 에너지 계획
 6.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 요지

- 시민위원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경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수정함과 동시에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 입법기술상으로 수정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 및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협의완료(심사대상 규제사무 반영)

- 제18조③항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 절차

-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한다.’ 규정 추가 신설
- 제21조①항을 ‘시장은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
 - 제21조②항을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

(2) 자산관리과(행정재산) : 협의완료(검토의견 반영)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원안동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2. 5.10 ~ 2012. 5.30)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881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26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안 중 시민위원회는 위원회정비 원칙과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경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용어의 통일, 띄어쓰기 등의 미비점을 입법기술상으로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사항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의 면제조항을 삭제함
-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와 관련하여 용어의 통일성, 띄어쓰기 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2를 제3항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를 “(대상 건축물)”로 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으로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안 제18조제2항 중 “냉난방 에너지관리 건물 중”을 “대상 건축물 중”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안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 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안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안 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한다.

안 제26조제2항 중 “단체 또는 재단 등”을 “재단 등”으로 한다.

안 부칙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2조(기본방향)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2. ----- - 3. ----- ----- ----- ----- --- 4. ----- <p>② 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 <p>제8조(기본방향)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
| <p>제8조(에너지계획) ①~② (생략)</p> <p>③ 에너지 계획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할</p> | <p>제8조(에너지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 <p>제8조(에너지계획)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u>(개정안과 같음)</u></p> |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과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제12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생략)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사용
- 3.~7.(생략)

<신설>

<신설>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현행과 같음)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 3.~7. (현행과 같음)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제18조(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

-----.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 3.~7. (개정안과 같음)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제18조(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건물에 대한 냉난방 온도를 일정 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냉난방 에너지 관리 건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 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개정안과 같음)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개정안과 같음)

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 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4.(개정안과 같음)

5. 유치원,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냉난방 관리온도 기준) 관리대상 건물의 냉난방 온도(이하 “냉난방 관리온도” 라 한다)와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20조(점검방법) ① 시장은 냉난방 관리온도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난방설비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6.~ 7.(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 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정안과 같음)

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삭제>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 냉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신설>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냉난방 온도 관리 대상 건물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냉난방온도관리대상 건물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 사용 억제와 입주자들의 에너지 절약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제18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③ (생략)
④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절약되어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

-----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24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제5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20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은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

제6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⑤ (개정안과 같음)

| | | |
|---|---|---|
| <p><u>제21조</u>(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생략)</p> <p><u><신설></u></p> <p><u>제22조</u>(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② (생략)</p> <p><u>제6장</u> 보 칙</p> <p><u>제23조</u>(에너지사용 제한) (생략)</p> <p><u>제24조</u>(에너지 백서) (생략)</p> | <p>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 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u><신설></u> ⑦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p> <p><u>제26조</u>(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재 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u></p> <p>2. <u>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u></p> <p>3.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제27조</u>(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② (현행과 같음)</p> <p><u>제7장</u> 보 칙</p> <p><u>제28조</u>(에너지사용 제한) (현행과 같음)</p> <p><u>제29조</u>(에너지 백서) (현행과 같음)</p> | <p>⑥ (개정안과 같음)</p> <p><u>제26조</u>(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재 단 등 ----- ----- -----</p> <p>1.(개정안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p> <p>3.(개정안과 같음)</p> <p><u>제27조</u>(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u>제7장</u> 보 칙</p> <p><u>제28조</u>(에너지사용 제한) (개정안과 같음)</p> <p><u>제29조</u>(에너지 백서) (개정안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장(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제18조(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 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

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20조(점검방법)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제18조부터 제19조까지)을 제5장(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3조로 하고, (중전)제18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4조로 하고, (중전)제19조제4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5장(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제6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21조를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를 “제27조”로 한다.

제6장(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을 제7장(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2조(기본방향)①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 ----- ----- ----- 4. ----- <p>② 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
| <p><u>제8조(에너지계획) ①~② (생략)</u></p> <p>③ 에너지 계획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 <p><u>제8조(에너지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u></p> <p><u><삭제></u></p> |

<신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에너지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민단체·종교계·경제계·학계·교육계·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

제12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② (생략)

<신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생략)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사용
- 3.~7.(생략)

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1. (현행과 같음)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 3.~7.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장 건축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신설> 제18조(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대상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 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냉난방관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유치원, 어린이집,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내용, 냉난방온도 관리기준, 점검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온도관리기준) 대상 건축물에서의 냉난방온도 관리기준(이하 “온도관리기준”이라 한다)과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6월~9월)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11월~3월) : 난방온도 20℃ 이하

제20조(점검방법)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온도측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

지 않을 경우 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21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대상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제18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
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제5장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① -----

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재정상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신설>

<신설>

<신설>

제21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전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

제22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② (생략)

제6장 보 칙

제23조(에너지사용 제한) (생략)

제24조(에너지 백서) (생략)

에너지 보급, 에너지 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재단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 및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장 보 칙

제28조(에너지사용 제한) (현행과 같음)

제29조(에너지 백서) (현행과 같음)